

교육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와 시기확대를 통하여 적기 재정투자사업 추진을 지원도록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명확화(안 제3조)

-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
- 2)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의 경우 심사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사업의 경우에는 심사대상에 포함

나. 중앙투자심사 실시횟수 확대(안 제4조)

정기심사를 기존 3회(1차 4월 30일까지, 2차 8월 31일까지, 3차 12월 31일까지)에서 4회(1차 1월 31일까지, 2차 4월 30일까지, 3차 7월 31일까지, 4차 10월 31일까지)로 확대실시하고, 자료 제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1.3.2. ~ 4.12.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외국자본인 사업”을 “외국자본인 사업.”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의 경우는 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제4조제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생략)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 ----- -----.
1. 삭제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4.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단서 신설>	4. ----- -- 외국자본인 사업. 단, 초중 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설의 경우는 제외
5. (생략) <신설>	5. (현행과 같음)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투자심사는 <u>매년 3회</u> 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u>1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8월 31</u>	② ----- <u>매년 4회</u> ----- ----- ----- -----, <u>1차 심사는 1</u> <u>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u>

<u>일까지, 3차심사는 12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 ③ 영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1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u>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판단서 4. 그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u>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u> ----- ----- ----- ----- -----. ③ ----- ----- ----- ----- ----- 1차 심사는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 말일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 1. (현행유지) 2. (현행유지) 3. (현행유지) 4. (현행유지)
---	---